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
제302회 임시회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【집행부발의】

### 검토보고서



2024. 3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4. 3. 13.  
기획 재경 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검토기간: 2024. 2. 28.(수) ~ 3. 6.(수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의 통합으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약칭: 지방분권균형발전법)」이 제정(2023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·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)
  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
  - 당연직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

-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위원회의 회의 소집 · 통지, 간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조사 · 연구, 운영세칙 등(안 제5조 ~ 제6조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 폐지(부칙 제2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2. 1~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

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시행(‘23. 7.10.)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【관 계 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23. 7. 10.]

- 제67조(시 · 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 · 운영) ① 시 ·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·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 · 도지사는 관할 시 · 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 소속으로 시 · 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.
- 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· 조정 등을 위하여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· 도 지방시대위원회, 시 · 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[시행 2024. 1. 16.]

- 제67조(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1.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  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3. 해당 시 · 군 · 구 지방의회 의원
  4. 해당 시 · 군 · 구 공무원
  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-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· 군 · 구의 조례로 정한다.